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이관〉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0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입법 배경	5
2. 개별 검토	7
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 신설	7
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11
다. 사업 실시기관의 업무	14
라. 다른 법률의 개정	18
※ 참고자료	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35)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1

2.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대한 정부 수정의견	23
3.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정부 수정의견	2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환의원 등 5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

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수소 분야에 대한 지원은 크게 ① 신에너지¹⁾ 중 하나인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과 ②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전문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이 지원하는 에너지에서 수소를 포함한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개정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²⁾³⁾(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⁴⁾임.

1)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등이 신에너지로 분류됨.

2) 의안번호 2202508,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3)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4)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는 더이상 신재생에너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⁵⁾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근거 법률 분리에 따른 입법 공백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소 분야에 대한 법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에 관련된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추어 수소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규정하는 수소에너지에 관한 지원 사항이 누락⁶⁾되는 것 없이 수소법으로 적절하게 이관되는지, ② 이관되는 사항이 기존의 수소법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다만,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어, 해당 설비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사항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6) 동 개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의 규정 중 수소법에 관련 사항이 없음에도 **수소법으로 이관되지 않는 조항은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7, 제12조의11, 제12조의1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 제27조의2** 등임.

2. 개별 검토

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 신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도 신설하여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규정 하던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을 수소법으로 이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표]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정의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수소에너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소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보임.

다만,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와 관련하여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⁷⁾되어 있으므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개정안은 제7조제5항에서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비의 사용처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수소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에 대한 사업비는 이중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설비

나. 연료전지 설비

다. ~ 다. (생략)

[표]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

현행법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설비 나. 연료전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삭제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사항은 수소법에서만 규정하도록 하여 수소에너지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임.

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개정안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소 전문기업 및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18조제1항).

[표]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u>수소전문기업에</u>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 ----- -----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수소법에서는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통한 임

대·처분을 허용⁸⁾하고 있음.

따라서,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수소발전사업자 등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대한 특례 부여를 유지하려면, 개정안과 같이 수소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대상에 수소발전사업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공유재산 임대·처분 시 수의계약 체결 외에 ①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② 100분의 50 범위에서 임대료 경감 등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 임대 기간과 대부계약·사업허가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취소와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일부 수소 관련 업체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다는 점⁹⁾을 감안하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들도 모두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개정안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비해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의 대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임대료 감면 근거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¹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예를 들어, 부산그린에너지와 노을그린에너지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0분의 10을 감면받고 있고, 고덕청정에너지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0분의 50을 감면받고 있음.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반영하여 특례 대상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임대료 감면 등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다. 사업 실시기관의 업무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관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실시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0 신설).

[표] 사업의 실시기관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u> <u>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u> <u>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u> <u>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u> <u>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u> <u>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u> <u>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u>

현행	개정안
	<u>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u> <u>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u> <u>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u> <u>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관리</u> <u>9.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u> <u>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u> <u>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단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동 센터에서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신에너지의 지원·관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제3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범위에서 수소에너지가 제외되고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소관 업무만을 계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업무를 공단에 이관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재생에너지센터 관련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조문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18.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3조(재생에너지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중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소관 업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다만, 현행 수소법에서 이미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실시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¹¹⁾이 많아져 각 기관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수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표준화 사업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역할인데, 개정안 제25조의20제1항제3호에 따라 공단이 맡게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능들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통합하거나 기관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공단의 사업 중 기존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및 기능과 중복되는 안 제25조의20제1항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는 의견¹²⁾을 제시하였음.

1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경우도 원래 H2KOREA만 지정되어 있으나, 2023.10.5.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가로 지정되어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

12)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참고자료 3] 참조

라. 다른 법률의 개정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소에너지가 신에너지에 포함되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소법과 신재생에너지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리되면 다른 법률에서도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개정안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 등을 인용하도록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법」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수소법에 따른 수소에너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조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명시¹³⁾한 경우 수소법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도

록 변경해야 할 것임.

다만, 효율적인 입법을 위하여 신에너지를 인용하는 조문을 모두 개정하는 법률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보다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인용 부문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다른 법률의 개정 예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번호 제13425호)

부 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⑦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⑧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따라서, 개정안 부칙에 시행일 외에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
에너지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를 인
용하도록 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참고자료 2]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대한 정부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산업부 수정안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u>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u>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 ----- ----- ----- -----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 ----- ----- ----- -----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삭제></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⑥ 산업통상자원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정부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산업부 수정안
<신설>	제25조의20(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3. 제25조의12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4.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5. 제25조의15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6.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8. 제28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관리 9.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25조의20(이용·보급 관리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2. 제25조의10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지원·관리 <삭제>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삭제>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삭제> <삭제> 6.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u>11.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u> <u>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보급 촉진</u> <u>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	--	---